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11
----------	-------

발의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김영진 · 안호영 · 염태영
권철승 · 안태준 · 윤후덕
소병훈 · 유동수 · 김한규
송기현 · 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 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 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 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 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 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u>